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5월 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5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32조,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“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제3장에 “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신설함

-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정함(안 제29조)

-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(안 제30조)
-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(안 제31조)

나. 기 타

-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.  
(안 부칙 제2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“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”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업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도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 임 :**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